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7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6. 9. 13)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도 봉 주

가. 제안이유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방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2.)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계약이행시 주민참여감독대상 감독범위 및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마포구 기획재정국장(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로 재직중인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가 추천하는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함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의 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 공중화장실공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수당 및 여비등(안 제14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지급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제정이유>

○ 2005.8.4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되어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제정내용>

○ 동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 위원회의 기능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종류 및 상한금액(공사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등을 규정하였음.

○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마포구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 일자 및 발의자 : 2006. 9. 13 강원돈 위원 외1

나. 수정이유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 보완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4조제1호 중 “수당 등을” 을 “수당 및 여비 등을” 으로, “직접적” 을 “직접적으로” 로 한다.

-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6. 7. 20.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 보완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안 제14조제1호 중 “수당 등을” 을 “수당 및 여비 등을” 으로,
“직접적” 을 “직접적으로” 로 한다.

나.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호 중 “수당 등을”을 “수당 및 여비 등을”으로, “직접적”을 “직접적으로”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수당 등을</u>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u>직접적</u>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_____수당 및 여비 등을_____. _____ _____ 직접적으로 _____.
(신 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 이유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 지방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이 시행됨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계약이행시 주민참여감독대상 감독범위 및 실행 단계에 대한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골자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마포구 경리관(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가)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자
 -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가 추천하는 자
 - 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마)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나. 임무 및 임기(안 제3조)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함
- 2)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심의
-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라.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의 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2)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 3) 공중화장실공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마. 수당 및 여비등(안 제14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지급가능.

3. 제정 근거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2항, 제109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6.04.20~2006.05.10(의견접수 내용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 ·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
위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다. 2006.6.26 조례 규칙 · 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 기획예산과-567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영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단,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